

의안 번호	제2663호~제2669호
----------	---------------

2025. 10. 27.(월) 11:00
제37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사보고서

안건
총 7건 : 불임 참조 (조례안 2, 개정조례안 3, 폐지안 2)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총괄

I 심사대상 안건

- 의안번호 제2663호 :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664호 :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폐지 보고
- 의안번호 제2665호 :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안번호 제2666호 : 장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안번호 제2667호 : 장성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의안번호 제2668호 : 장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669호 : 장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II 심사 경과

의안번호	제출일	제출자 (발의자)	회부일	상정일
제2663호	2025. 10. 2.	장성군수 (기획실)	2025. 10. 2.	2025. 10. 22.
제2664호	2025. 10. 2.	장성군수 (기획실)	2025. 10. 2.	2025. 10. 22.
제2665호	2025. 10. 2.	장성군수 (관광과)	2025. 10. 2.	2025. 10. 22.
제2666호	2025. 10. 2.	장성군수 (가족행복과)	2025. 10. 2.	2025. 10. 22.
제2667호	2025. 10. 2.	장성군수 (가족행복과)	2025. 10. 2.	2025. 10. 22.
제2668호	2025. 10. 2.	장성군수 (가족행복과)	2025. 10. 2.	2025. 10. 22.
제2669호	2025. 10. 2.	장성군수 (가족행복과)	2025. 10. 2.	2025. 10. 22.

III 심사결과

안건	심사결과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폐지 보고	원안가결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장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5. 10. 2.
- 제출자 : 장성군수(기획실)
- 회부일자 : 2025. 10. 2.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0. 22.(제37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상위법 「국민제안 규정」 제5조에 의거 제안 자격 범위 확대를 통한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제안자격 범위 확대(제1조 ~ 제7조)
 - (현행) 장성군민 (개정) 장성군정에 관심있는 자
 - 제안의 종류(제4조)
 - (현행) 군민제안 (개정) 국민제안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일부개정안은 「국민제안 규정」 제5조에 의거 제안 자격 범위 확대를 통한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 기존 조례에서의 제안자는 장성군민 또는 장성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누구든지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자의 범위를 장성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 또는 장성군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 기존 조례 제1조에 제안제도의 근거로 인용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가 2022년 1월 11일자로 삭제됨에 따라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기존 조례 제1조에 제안제도의 근거로 인용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가 2022년 1월 11일자로 삭제됨에 따라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수정안 제출

6. 수정안의 요지

- 현행 조례 제1조(목적)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장성군민과'를 '장성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장성군민과”를 “장성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2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폐지 보고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5. 10. 2.
- 제출자 : 장성군수(기획실)
- 회부일자 : 2025. 10. 2.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0. 22.(제37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장성군, 함평군, 영광군 각 3개군 합의에 의해 「전라남도 서북 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협의회 개요

- 명칭 :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 구성 : 3개 군(장성 · 함평 · 영광)
- 추진기간 : 2014년 ~ 2017년
- 추진목적 : 생활권별 지역자원의 공동활용 등을 통해 주민의 광역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주요내용

-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및 공동 협약 체결 : 2014. 2.
- 2015년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발굴 : 2014. 2.
- 지역행복생활권(농어촌생활권) 사업 공동 추진
; 생활권 치매거점 병동 사업('14~'15)

※ 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내 치매전문거점센터 건립

; 재난재해 공동 시설장비 및 보관창고 지원사업('15~'17, 함평군-영광군)

- 폐지사유

- 2017년 이후 회의 미개최로 협의회의 존치 필요성 약화
 -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구성 3개 군 폐지 합의
 - 2024. 09. : 행복생활권 협의회 존치 여부 의견 조회(함평 → 장성, 영광)
 - 2024. 10. : 행복생활권 협의회 존치 불필요 의견 회신(장성, 영광 → 함평)
 - 2024. 11. : 3개 군 행복생활권 협의회 폐지 합의
- ※ 함평군('24. 12.), 영광군('25. 03.) 폐지 완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폐지안건은 2014년 우리군과 함평군, 영광군 등 3개군이 생활권별 지역자원의 공동활용 등을 통해 주민의 광역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성한 협의회 임.
- 협의회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개최한 이후 현재까지 운영이 되지 않았으며, 행정환경 변화 등 더 이상 협의회의 존치 필요성이 약화됨.
- 이에 따라 2024년 11월 3개군이 모두 폐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근거하여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를 폐지 보고하는 사항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5. 10. 2.
- 제출자 : 장성군수(관광과)
- 회부일자 : 2025. 10. 2.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0. 22.(제37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장성군 관광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단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 진흥 및 관광·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재단의 설립 근거 및 법적 형태 명시 (제3조)
 - 장성군이 출연하여 설립하는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추진
- 재단의 주요 사업 범위 규정 (제4조)
 - 문화정책 기획, 축제·관광상품 개발, 문화유산 보존, 관광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등 문화·예술·관광 전반을 아우르는 12개 사업 수행
- 재정 운영 및 출연금 사용 근거 마련 (제6조~제8조)
 - 군 출연금, 자체 수익, 수익사업 등으로 재정 구성 / 군은 예산 범위 내 재정 지원 가능
- 조직 구성 및 임원 임명 체계 정립 (제9조~제11조)
 - 이사장(군수), 상임이사 포함 이사 및 감사 구성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이사회 설치 및 의결구조 명확화

- 군의 관리 · 감독 및 위탁 사무 명시 (제13조, 제15조, 제16조)
 - 군수는 업무 위탁·대행 가능, 필요 시 검사·감사·시정 요구 / 위법 시 출연금 반환 및 제재 가능
- 재단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 규정 (제17조~제18조)
 - 해산 시 잔여재산은 장성군에 귀속되며, 공익사업 또는 유사 목적의 법인에 활용 가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제정안은 장성군 관광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단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 진흥 및 관광 ·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 재단운영의 투명성과 재정의 건전성 · 효율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신뢰성 확보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항의 신설 등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장성군 관광문화재단의 투명성과 재정의 건전성 · 효율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신뢰성 확보와 책임성을 높이고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근거법령 추가, 정관 작성 또는 변경시 절차 추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보고 · 검사 및 감사 등 관련 조항의 추가, 신설 등 수정하자는 의견

6. 수정안의 요지

-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내용중 근거법령인 「장성군 출자 ·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추가 수정하는 내용

- 안 제5조 제2항 중 “재단의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중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를 “군수와 협의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장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추가 수정하는 내용
- 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며, 제10조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제1항에는 이사회 임원 추천을 위해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자를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호에는 군수가 추천하는 자 4명, 제2호에는 군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으로 하고 제2항에는 임원추천위원회는 필요시 새로이 구성하고, 추천된 자가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로 신설
- 안 제10조 신설안에 따라 안 제9조 제5항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를 “임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로 수정
- 안 제15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제2항을 “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업무·회계·재산으로 한정하여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할 수 있다.”로 추가 및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장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를 “군수와 협의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장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 신설에 따라

제9조제5항 중 “구성 및 운영”을 “운영”으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이사회 임원 추천을 위해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자를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군수가 추천하는 자 4명
2. 군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필요시 새로이 구성하고, 추천된 자가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5조제2항을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업무·회계·재산으로 한정하여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의 관광·문화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성군 관광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정관) ① (생략) ② 재단의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p>	<p>제1조(목적)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장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p> <p>제5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군수와 협의하여 야 하고, 그 결과를 장성군의회 (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9조(임원 등)①~④ (생 략) ⑤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⑧ (생 략)</p> <p>제10조~제19조 (생 략)</p> <p><신설></p>	<p>제9조(임원 등)①~④ (현행과 같음) ⑤ ----- 운영 -----. ⑥~⑧ (현행과 같음)</p> <p>제11조~제20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p> <p>제10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① 이사회 임원 추천을 위해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자를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1. 군수가 추천하는 자 4명 2. 군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p> <p>② 임원추천위원회는 필요시 새로이 구성하고, 추천된 자가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p>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15조(보고·검사 및 감사) ① (생략) <신설> ② (생략)	제15조(보고·검사 및 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u>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u> <u>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업무·</u> <u>회계·재산으로 한정하여 행정사</u> <u>무감사 또는 조사 할 수 있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5. 10. 2.
- 제출자 : 장성군수(가족행복과)
- 회부일자 : 2025. 10. 2.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0. 22.(제37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장성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목적 (안 제1조)
 -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 대한 보건의료와 장기요양·돌봄에 관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연계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 유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역 실정에 맞는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 돌봄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군수는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통합지원 사업 추진(안 제5조, 제6조)
 -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 및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 관련 서비스를 규정함
- 의료 등의 통합지원 기반 마련(안 제8조~제11조)
 - 지역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 설치하고 통합지원 관련 정책 및 지역계획 수립을 심의할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통합지원 사업 추진 전담조직의 설치·운영을 규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제정안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장성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5. 10. 2.
- 제출자 : 장성군수(가족행복과)
- 회부일자 : 2025. 10. 2.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0. 22.(제37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본 조례는 아동·청소년·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사항이 대상자별로 세분화된 개별 조례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고 실효성이 저하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성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폐지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사항이 대상자별로 세분화된 개별 조례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고 실효성이 저하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5. 10. 2.
- 제출자 : 장성군수(가족행복과)
- 회부일자 : 2025. 10. 2.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0. 22.(제37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여성친화도시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연구개발 등에 관한 제안·조정·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문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 구성 신설(안 제40조 제1항 ~ 제3항)
 - 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 기능, 구성, 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일부개정안은 여성친화도시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연구 개발 등에 관한 제안·조정·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함으로써 여성 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장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5. 10. 2.
- 제출자 : 장성군수(가족행복과)
- 회부일자 : 2025. 10. 2.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0. 22.(제37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장성군 삼서면 공중목욕장 준공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별표 문구 변경 (별표 1 명칭 및 위치란)
 - (현행) 장성군 공중목욕장 / 장성군 북이면 사남북길 14
 - (개정) 북이면 공중목욕장 / 장성군 북이면 사남북길 14
삼서면 공중목욕장 / 장성군 삼서면 해삼로 1138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일부개정안은 장성군 삼서면 공중목욕장 준공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